

1. 개정이유

「교통안전법」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*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관계없는 항공점검기관 삭제(안 제1장 1.2, 제4장 1.3, 2.1, 3.2 등)

* 교통안전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

나. 상위법령*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관계없는 항공점검대상 삭제(안 제4장 1.2, 1.3, 2.1, 3.2, 별표4 등)

* 교통안전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

다. 관련규정*을 반영하여 항공분야 모든 감독관을 “항공안전감독관”으로 통일(안 제4장 2.3)

*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(국토부 훈령) 제2조 제16호

라. 표기상의 오류 및 오타 정비 등(안 제1장 3.5.1, 제3장 2.2, 2.3 가목, 제4장 1.2, 2.1, 2.4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규대비표

교통수단안전점검·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교통수단안전점검·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절1.2다목2) 중 “지방항공청장, 항공교통본부장”을 “지방항공청장”으로 한다.

제1장제3절3.5.1다목1) 중 “교통정책관”을 “종합교통정책관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철도정책관”을 “철도안전정책관”으로 하며, 같은 목 3) 중 “운항기획관”을 “항공안전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2.2다목 중 “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체계는(주어 수정필요)”를 “교통행정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2.3가목2) 중 “별표 6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4장제1절1.2가목 중 “항공사업법”을 “「항공사업법」”으로, “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(이하 “항공기운영자”라 한다), 항공기정비업자·항공기취급업자·항공기대여업자”를 “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(이하 “항공기운영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

제4장제1절1.2나목 중 “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4”를 “「항공안전법」 제3조 및 제4조”로 한다.

제4장제1절1.2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)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4장제1절1.3가목 중 “항공정책실의 소속기관으로서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 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”를 “소속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”로 한다.

제4장제1절1.3나목 중 ““항공점검기관”이란”을 ““항공점검기관”이란”으로, “부산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”를 “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”로 한다.

제4장제2절2.1 중 “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의”를 “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”로 한다.

제4장제2절2.1가목 중 “항공안전정책관·지방항공청장·항공교통본부장”을 “항공안전정책관·지방항공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장제2절2.1가목2) 중 “소형항공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·자가용소유자, 공항운영자,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, 항공기취급업자”를 “소형항공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”로 한다.

제4장제2절2.1가목3) 중 “3) 항공교통본부장 : 항공로 관제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계획”을 삭제한다.

제4장제2절2.3가목 중 1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2)부터 8)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목 9)를 2)로 한다.

- 1) 「항공안전법」 제132조 및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

제4장제2절2.4 가목 중 “별표 5”를 “별표 4”로 한다.

제4장제3절3.2나목 중 “항공기운영자·공항운영자”를 “항공기운영자”로 한다.

제4장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5장 1.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

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

부문별	점검항목	비고
<p>항공기 운영자</p>	<p>가. 자체 교통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나. 운항관리 다. 항공기 사고대비 라. 정비관리 마. 종사원관리 바. 보호장구 사. 외부 이물질로 인한 손상(FOD) 방지 아. 차량 및 장비관리 자. 특별수송대책반 운영 차. 비정상 운항사태 발생시 대책 카. 승객편의 대책 타. 황사대비 파. 풍수해 및 폭염대비 하. 설해대비 거. 기타 안전위험요소</p>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</p> <p>제1절 일반사항(제1장)</p> <p>1.2 용어의 정의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“교통행정기관”이란 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2) 항공 : 항공안전정책관, <u>지방항공청장, 항공교통본부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3) (생략)</p> <p>제3절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(제1장)</p> <p>3.5.1 추진실적 평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이 되며, 위원은 해당 분야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총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1장 -----</p> <p>제1절 -----</p> <p>1.2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2)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 <u>지방항공청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3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절 -----</p> <p>3.5.1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.</p>

1) 도로교통분야 : 교통정책관

2) 철도교통분야 : 철도정책관

3) 항공교통분야 : 운항기획관

4) (생략)

다. ~ 마. (생략)

제3장 철도교통수단안전점검

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(제3장)

2.2 점검의 실시

가. ~ 라. (생략)

마.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체계는(주어 수정필요) 효율적인 철도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 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, 점검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.

2.3 점검의 실시

가. 일반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) (생략)

2) 점검방법 :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6을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조정

1) ----- 종합교통정책관

2) ----- 철도안전정책관

3) ----- 항공안전정책관

4) (현행과 같음)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-----

제2절 -----

2.2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교통행정기관은 -----

-----.

2.3 -----

가. -----
-----.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----- 별표 3 -----

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취약점을 찾아 시정조치를

제4장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

제1절 일반사항(제4장)

1.2 일반사항(제4장)

가. 이 장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(이하 “항공기운영자”라 한다), 항공기정비업자·항공기취급업자·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보유한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용한다.

나.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4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등,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다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의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.

1) 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

제4장 -----

제1절 -----

1.2 -----

가. ----- 「항공사업법」-----
----- 운송사업자·항공기사용사업자(이하“항공기운영자”라 한다) -----

-----.

나. 「항공안전법」 제3조 및 제4조-----

-----.

다. 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 (국토교통부훈령)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교통수단

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(훈령)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

2) 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「항공안전법」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원증을 소지하고 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(훈령)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

1.3 용어의 정의

가. “항공소속기관”이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소속기관으로서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.

나. “항공점검기관”이란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,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.

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(제4장)

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.

1.3 -----

가. -----
----- 소속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-----
-----.

나. “항공점검기관”이란 -----

-----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-----
-----.

제2절 -----

2.1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의 수립

가.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
관리대책에 따라 항공안전
정책관 · 지방항공청장 ·
항공교통본부장(이하 “항
공점검기관의 장”이라 한
다)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항
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
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) (생략)
- 2) 지방항공청장 : 관할구
역내 소형항공운송사업
자 · 항공기사용사업자 ·
자가용소유자, 공항운영
자, 비행장 및 항행안전
시설관리자, 항공기취급
업자에 대한 점검계획
- 3) 항공교통본부장 : 항공
로 관제 및 항공교통흐름
관리 시설 및 장비에 대
한 점검계획

2.3 점검반의 구성

가.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점
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
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점
검자로 하는 점검반을 구
성 · 운영한다.

- 1)

--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 --

가. -----
----- 항공안전
정책관 · 지방항공청장---

-----.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-----
-- 소형항공운송사업자
· 항공기사용사업자-----

<삭 제>

2.3 -----

가. -----

-----.

- 1) 「항공안전법」 제132조
및 항공안전감독관에 대

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
규정 제2조에 따른 항공
안전감독관

- 2)
- 3) 공항안전검사관
- 4) 공항안전감독관
- 5)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
- 6) 항행안전감독관
- 7) 항공위험물감독관
- 8) 항공보안감독관
- 9) (생략)

2.4 점검의 종류

가. 점검은 별표 5의 점검항목을 토대로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나. ~ 다. (생략)

제3절 점검결과의 처리

3.2 운항정지 등

가. (생략)

나.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항공소속기관의 장은 점검결과, 항공기운영자·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2) (현행 9)와 같음)

2.4 -----

가. ----- 별표 4-----

-----.

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
제3절 -----

3.2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 항공기운영자 -----

따라 처분할 수 있다.

제5장 행정사항

1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5장 ---

1. -----

-- 2024년 1월 1일 -----

----12월 31일-----

--.